

1. 개정이유

택시부제는 '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정책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어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칸막이 규제임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택시부제 규제를 완화하고, 택시부제의 운영·연장 여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택시부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에서 택시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택시부제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부제 운영·연장 여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 마다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관청은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부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시부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관할관청은 이 훈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외 관할관청은 6개월 이내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u>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② · ③ (생략)</p>	<p>제9조(택시부제) ① ----- ----- ----- ----- ----- ----. <u>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② <u>관할관청은 택시 수급상황, 국민 · 택시업계 ·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 · 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